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031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321호, 2023.8.8. 공포, 2024.2.9. 시행)에 따라 관련된 과징금 부과기준 일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상한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204호

○ 전화 : 043-719-1807 팩스 : 043-719-1800

○ 이메일 : nattoo@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별표 1 제1호라목 중 “2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